

# D'LIGHT

법무법인 디라이트

[www.dlightlaw.com](http://www.dlightlaw.com)

8F 311 Gangnam-daero Gangnam-gu Seoul, Korea  
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, 8층

T 82 2 2051 1870  
F 82 2 2051 1877

[info@dlightlaw.com](mailto:info@dlightlaw.com)

# OTT에 대한 해외 & 국내 규제

표경민 변호사

# OTT 규제에 대한 찬반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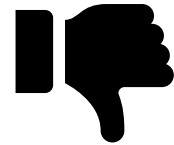
## OTT 규제 찬성 논거



-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
- 기존 방송산업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성

## OTT 규제 반대 논거

- 기존 방송산업과 OTT 산업의 구조적 차이
- 국내외 OTT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



# OTT 규제의 방향

## 수직적 규제 VS 수평적 규제

### 수직적 규제 (미국, 일본)

- ‘방송’과 ‘통신’간 산업 특성의 차이를 고려
- 각기 다른 산업에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

### 수평적 규제 (EU)

-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쟁 사업자라고 봐야
- 경쟁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 확보

# 해외의 OTT 규제

## 1. EU

-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(2010년 제정)에 따른 수평적 규제
- 서비스의 상업성, 제작 및 유통 과정의 전문성, 배포 대상의 범위, 전자커뮤니케이션 망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 결정
- 2018년 유튜브와 같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 유통 OTT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, ‘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유통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(VSP)’ 개념 신설
- 국내에서 시행되는 콘텐츠 내용 규제 수준과 유사(광고 표시, 연령제한, 범죄 및 증오표현 금지 등)

# 해외의 OTT 규제

## 2. 영국

-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계층별 미디어 규제 실시
- OTT 서비스를 주문형 비실시간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‘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’로 규정
- 일반 방송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만, 일반 인터넷 콘텐츠보다 규제 수준이 높음
- OTT에 대한 내용 규제는 EU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의 규제 수준과 유사

# 해외의 OTT 규제

## 3. 미국

- 2010년, OTT 사업자인 스카이엔젤의 ‘다채널방송사업자’ 지위 인정 요청(스카이엔젤과 디스커버리의 갈등)
- 2012년, 연방통신법에 새로운 미디어 사업 유형인 ‘온라인 영상 사업자’ 추가, 이후 실시간 온라인 영상 사업자를 ‘가상 다채널방송사업자’라는 새로운 지위로 분류
- 2014년 12월, 가상 다채널방송사업자를 다채널 방송사업자에 포함하는 정책안 공개: OTT는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을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, 재전송료 부담을 지게 됨

# 해외의 OTT 규제

## 4. 일본

-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'기간방송' 과 그 외 '일반방송'에 대하여 방송법으로 규제
- 반면, OTT를 통신 서비스로 간주,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
- OTT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 없음
- 2018년 공영방송인 NHK를 제외하고 규제 수준을 완화하여 방송 산업을 활성화한 것이 특징



# 국내의 OTT 규제

## 1. 국내의 현행 규제

법령	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	규제 내용
전기통신사업법	부가통신 사업자	사업 개시를 위한 신고 의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	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	타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자료, 청소년 유해매체물 삭제 등 조치 의무, 불법정보 처리 금지 의무
저작권법	온라인 서비스 제공자	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복제·전송 중단 등 조치 의무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	-	유료로 유통되는 VOD 콘텐츠의 경우, 사전 등급 심의 대상

# 국내의 OTT 규제

## 2. 2019년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(임기만료 폐기)

### 1차 개정안

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현행 방송법에 통합
- OTT 사업자를 '부가 유료 방송사업자'로 규정, 방송과 동일한 규제 적용



### 2차 개정안

-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 신설, 방송과 별도의 규제 적용
- 별도의 심의규정을 두고, 소유제한 등 방송에 대한 규제는 적용 X

# 국내의 OTT 규제

## 과기부

2020. 8.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 문체부

2020. 9.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
2021. 5. 영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 방통위

2021. 1.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착수

# 국내의 OTT 규제

##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(2020. 8. 입법예고)

-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
- OTT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자율등급제 적용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
- 자율등급제 및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OTT 사업자의 선별 필요성
- ✓ 과기부 장관은 OTT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,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문체부장관에게 현황 보고
- ✓ 자본금 1억원 이하 신고 면제규정 적용 삭제

# 국내의 OTT 규제

## 4-1.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 (2020. 9. 발의)

- 방송콘텐츠와 OTT 콘텐츠를 포괄하는 '영상미디어 콘텐츠' 개념 재정립
- 문체부 장관 소속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위원회 설치, 종합계획 심의
-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기반조성
-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 신설, 표준계약서 마련
- 영상미디어 콘텐츠 이용자 보호 및 접근권 강화
- 영상미디어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: 유상으로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자가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거나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(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명시)
- 영상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의 신고제도 및 신고 의제

# 국내의 OTT 규제

## 4-2. 문화체육관광부 영비법 일부개정안 (2021. 5. 입법예고)

-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,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자 신설
-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자 중 심사를 통해 3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
-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 준수, 영비법상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, 등급분류결과를 영등위에 통보, 책임자 지정
-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결과 모니터링, 필요 시 조정 통보

# 국내의 OTT 규제

## 5. 방송통신위원회 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(2021. 1. 제정 착수)

-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법,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미디어 법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일
- OTT는 온라인 시청각 미디어로 포섭, 산업 초기임을 고려 최소 규제 적용
- OTT 사업자별 자본금, 하루 이용자 수,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규제 차등 적용
-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,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예상

# Key Points

## 외국의 규제 형태와 교훈

- ✓ 공정경쟁,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되, 최소한의 규제로 산업 발전을 모색
- ✓ 2019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→ 과기부, 문체부, 방통위의 OTT 지원 및 활성화 기조(세액지원 및 자율등급제)

## 앞으로의 OTT 규제 예상

- ✓ 부처간 입법충돌 예상, 차기 정부의 해결 주목
- ✓ 사업자 규제는 신고의무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
- ✓ 내용 규제는 영상진흥기본법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규정, 다만 규제 수준이 높지 않을 듯



Thank you